

## 환경녹지과

위원회별	소관부서	감사항목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계	완결(계속추진)	추진중	
건설산업위원회	환경녹지과	14	8	8	4	4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 결과	완결여부	비고
9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 추진 촉구 - 요구 이수정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쓰레기매립지로 활용중인 장소는 2~ 3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쓰레기대란이 우려되는데도 환경단체 등 일부의 반대를 이유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바, 쓰레기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점을 감안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이 빠른 시기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현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내</li> <li>○ 규모 : 30톤/일</li> <li>○ 방법 : 열분해 용융방식</li> <li>○ 사업비 : 7,000백만원 (국비 2,100, 지방비 4,900)</li> </ul> </li> <li>◎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 : 2004. 7월</li> <li>○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 : 2005. 3월</li> <li>○ 기술공모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05. 7월</li> <li>○ 실시설계 및 계획승인 : 2005. 10월</li> <li>○ 착공 : 2005. 10월</li> </ul> </li> </ul>	추진중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0	<p>가로수 수종 선택 철저</p> <p>- 요구 이수정의원 정화석의원 조선제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그런 거창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수목식재사업이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수목선정으로 꽃이 개화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li> <li>- 국도3호선 도로변 및 건계정 주변 벚나무, 빼새 도로변 배롱나무 미개화</li> <li>○ 향후 수종 선정시는 현지여건과 해발 고도 등 모든 여건을 감안 선정도록 하고, 국도변과 건계정의 미개화 되는 벚꽃나무에 대하여는 개화되는 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창군 관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벚나무 외10종으로 본수는 39,000본 가량이며, 매년 가로수 식재지에 대한 보식,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가로변 경관조성으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음</li> <li>○ 수목식재사업시 현지지형여건 및 해발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수종선정도록 하고, 국도3호선 및 건계정 주변 미개화되는 벚꽃나무 개선에 대하여 건계정 주변과 국도3호선 김천방향으로 우변차선에 대하여 우선하여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변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i> </ul>	계속추진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1	건계정등산로 체육시설 등 보강 조치  - 요구 이수정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계정 등산로의 체육시설물중 일부 이용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정위치로 이설하고 파손된 시설은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할 것.</li> <li>○ 등산로 입구와 일부 등산로는 정비가 되지 아니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토록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수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계정 등산로 공사가 완료되고, 위험지구에 대한 목재데크 시설, 전망대, 대피소, 인공폭포, 물레방아 등의 시설물 설치로 많은 군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인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등산로 주변 고사목정비, 출렁다리 지구에 대한 추가 계단 설치 등의 정비사업으로 군민의 체력 증진과 여유로운 삶의 질을 향상 코자 쾌적한 등산로 정비를 실시 한 바 있음.</li> <li>○ 앞으로 자체 등산로 정비 인부를 사역하여 부족한 시설물 및 보행에 불편이 있는 등산로를 보수·정비토록 하여 지속적인 등산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음.</li> </ul>	계속추진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완결여부	비고
11	건계정등산로 체육시설 등 보강 조치  - 요구 이수정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계정 등산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은 현재 소유자와 부지사용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필요시 보상을 위한 예산반영 방안을 강구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소유자와 부지사용 협의가 되지 않은 임지는 거창읍 상림리 산29-1번지로 부산광역시 거주의 장씨 외3인으로 여러 차례 접촉을 해 보았으나, 미륵더미쪽의 등산로를 폐지할 것을 완강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임야 부지사용을 위하여 보상을 실시하면 건계정 등산로의 모든 임야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li> <li>○ 학연, 자연 등 관련인맥을 조사 동원하여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임야사용 동의를 반도록 노력 하겠으며 필요시 인근 임지를 이용 전기인입하여 가로등을 활용토록 하겠음.</li> </ul>	계속추진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완결여부	비고
12	산림조합시행 공사 지도감독 강화 - 요구 전 의원 (박점용의원) (조선제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도개설 및 가로수 식재 사업은 관련분야의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 대부분의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부실 시공이 많이 지적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동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업체에 시공 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합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li>   <li>○ 수목식재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지나치게 짧아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법 제5조 규정 및 산림조합법 제46조 1항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업을 산림조합에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시공 후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수해로 인하여 임도 피해가 발생되는 등 다소 시공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후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li>   <li>○ 수목식재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명시되어 있어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경미한 사항은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토록 독려하고 있음.</li> </ul>	완결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 결과	완결여부	비고
13	읍민생활공원 추진 철저  - 요구 조선제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승인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 시행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고,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것.</li> <li>○ 동 사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파크조성사업 관련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하고 생동감있는 휴식처를 제공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 및 다양한 스포츠 레저공간 제공을 통한 21세기형 여가문화를 정착하고자 시행하는 읍민생활공원조성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승인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 시행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으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군민의 공원단지화에 이바지 하겠음.</li> <li>○ 읍민생활공원 조성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07 : 생활공원 조성사업지 확정</li> <li>- 2004. 02 : 생활공원 조성 기본계획 보고</li> <li>- 2004. 05 :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li> <li>- 2004. 06 :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요청 (경남도→농림부), 군계획위원회 자문</li> <li>- 2004. 06 : 읍민생활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li> <li>- 2004. 07 : 조성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 완료</li> <li>- 2004. 08 :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거창군)</li> <li>- 2004. 11 : 토지감정 및 보상실시</li> <li>- 2004. 12 : 농지전용협의 요청(경남도→농림부)</li> </ul> </li> <li>○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04 :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li> <li>- 2007. 12 : 생활공원 조성사업 준공 예정</li> </ul> </li> </ul>	추진중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완결여부	비고
14	한가정 나무심기 사업 타당성 재검토 - 요구 정연명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가정나무심기운동은 업무보고 청취시에는 읍소재지 위주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면지역 식재가 전체의 70%를 점하며, 식재 장소도 제방, 전답주변 등으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하고 있고 사업의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공원화 및 푸른거창만들기 조기실현을 위한 생활주변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민의 관심속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의 추진으로 유실수 및 정원수 12,000본을 구입 식목일을 전후로 수목을 무상공급 식재함으로 군민의 참여유도에 따른 홍보에는 많은 성과를 거 얉하였으나,</li> <li>○ 식재장소등이 다소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곳에 식재를 하였던것에 대하여는 향후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목적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li> </ul>	완결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5	오가채석장 재해예방 점검  - 요구 정화석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업상태인 오가채석장은 많은 면적의 표토가 제거되어 집중호우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피복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계속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도록 하겠음.</li> </ul>	완 결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 결과	완결여부	비고
16	채석장복구지 사후관리 철저 - 요 구 정연명의원 조선제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석장 복구는 업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되나 사전 설계의 적정성 검토와 복구점검은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행정의 검토 및 확인 부실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도의 복구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복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완벽히 복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복구 설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구에 대한 사후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li> <li>○ 향후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도록 할 것.</li> <li>○ 휴업중인 채석장에 대하여는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석장 복구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와 부합되게 복구설계가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복구 전 공정이 실시 설계와 동일하게 복구가 되도록 현지 지도토록 하겠음.</li> </ul>	완 결	